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4
----------	-------

발의연월일 : 2026. 7. 28.

발 의 자 : 소병훈 · 권향엽 · 박용갑
허영 · 박정 · 이춘석
서영석 · 강준현 · 박지원
권칠승 · 이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아니함. 이는 친족 관계의 특수성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

특히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 그러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범인은닉 또는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증거인멸 등의 가중처벌) ①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증거인멸 등의 가중처벌) ①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